#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3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 허은아 • 박정하 • 배준영

서범수 · 서일준 · 윤주경

이만희 · 이채익 · 이태규

장동혁 • 태영호 • 홍석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 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제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 2.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
- 3.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 4.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발전 종
	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
	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u>개선</u>
	3.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u>활용 방안</u>
	4.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u>방안</u>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발
	전에 관한 사항